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2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2월 9일

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2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,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개정(안 제 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개정(안 제5조 ~ 제6조)

- 종합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개정(안 제7조 ~ 제9조)
-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· 대행 신설(안 제10조)
-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, 표창 및 포상 개정(안 제11조~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’으로 개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는 법 제3조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· 공표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· 부당 행위 등을 신고 후 신고행위로 인해 불이익 등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과 더불어 표창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한편 낮은 임금 수준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‘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’

에서 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’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,

-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,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으로, 상위 법령에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3년 2월

발의자: 이순우·000(0인)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,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개정(안 제5조 ~ 제6조)
- 다. 종합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개정(안 제7조 ~ 제9조)
- 라. 처우개선위원회 설치·대행 신설(안 제10조)
- 마.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, 표창 및 포상 개정(안 제11조 ~ 제12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2.9. ~ 2023.2.13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**”을 “**사회복지사
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**”으로, “**정하는**”을 “**규정하여 서울특별시
영등포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
조 및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**법**”
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삭제

제3조 중 “**영등포구**”를 “**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고 한다)**”로, “**등으로 한
다**”를 “**등에 대하여 적용한다**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**관하여는**”을 “**관하여**”로, “**조례로**”를 “**조례가**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“**구청장**” 이”를 ““**구청장**”이”로, “**노력한다**”를 “**노력하여
야 한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

“**신변안전**을”을 “**안전 및 인권보호**를”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「**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**」 제4조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**사회복지기관의 책무**)”를 “(**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**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**”를 “**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**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**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**)”을 “(**종합계획의 수립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사회복지사**”를 “**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**”로, “**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**”를 “**수립할 수 있다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
2.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**특별한**”을 “**정당한**”으로 한다.

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전문성 향상**”을 “**지위향상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근무환경 개선**을”을 “**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처우개선**”을 “**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**

경, 처우개선”으로, “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”를 “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
4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
5.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
6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의 제목 “(위원회 설치·대행)”을 “(처우개선위원회 설치·대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회복지사 등의”를 “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”로, “향상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”를 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”으로, “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”를 “처우개선위원회”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7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9조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 기타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신분보장)”을 “(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관련하여”를 “관련하여 위법 .”로, “비리”를 “그 밖에 비리”로, “기관과 수사 기관”을 “행정기관과 수사기관”으로, “해야 하며, 항상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”를 “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의 제목 “(포상)”을 “(표창 및 포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모범 되는”을 “모범이 되는”으로, “포상할”을 “표창 및 포상을 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<u>사회복지사</u> 등에 대한 <u>사기진작과 처우개선</u>에 필요한 사항을 <u>정하는</u>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회복지사</u> 등의 <u>처우개선과 지위향상</u> 등----- ----- <u>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</u> 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<u>사회복지사업</u>”이란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. 2. “<u>사회복지기관</u>”이란 「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</u>」 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의 <u>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</u>을 말한다. 3. “<u>사회복지서비스</u>”란 「<u>사회복지법사업법</u>」 제2조제6호에 따른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</u> 및 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2조 및 「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</u>」 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삭제</u> 2. <u>삭제</u> 3. <u>삭제</u> 4. <u>삭제</u>

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, 재활, 직업 소개 및 지도,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대상)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

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

제3조(적용 대상) -----
-----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고 한다)-----

-----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

-- 관하여 -----

-- 조례가 -----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-----
----- “구청장”이-----

----- 노력
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「사회복지사 등의

보수가 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분보장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회복지기관의 책무) ① (생략)

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

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
2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

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-----
----- 안전 및 인권 보호를 -----.

제6조(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-----.

제7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-----

-----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----- 수립할 수 있다.

② -----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

2.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

3.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

4. (생략)

제8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2.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
<삭 제>

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8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 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정
당한 -----
-----.

제9조(지원 사업 등) ① -----

지위향상-----
-----.

1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-----
2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, 처우개선 ---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-----
--

3.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
· 훈련지원 사업

4. 인권 및 신변 보호 사업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10조(위원회 설치·대행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<신 설>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

3.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

4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

5.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

6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처우개선위원회 설치·대행) ① -----
---- 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--
--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--- 처우개선위원회----- 둔다.

1. 제7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3. 제9조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

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

<신 설>

제11조(신분보장)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기관과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, 항상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12조(포상) 구청장은 사회복지

영 조례」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 기타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) ① -----
-- 관련하여 위법 . --- 그 밖에 비리 ---- 행정기관과 수사 기관-----
-----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-----
-----.

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표창 및 포상) ① -----

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
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사회복지
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
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 모범이 되는 -----

--- 표창 및 포상을 할 -----

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
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
표창 조례」를 준용한다.